

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시행(1단계)

※ **조정** 및 **변경**(적색) / **시설별 핵심방역수칙**(참고 1~3)

□ **적용기간** : 2020. 10. 12.(월) 0시 ~ **별도 해제 시**까지

※ 다만, 인천시 일부 시설에 대해 10. 18.(일) 24시까지 기존 2단계 조치 **일주일 연장 시행**
- **실내외 시립공공체육시설**(운영중단), **월미바다열차**(운영중단), **공동주택 주민편의시설**(운영자체 권고)

□ **중수본 기본방향**

○ (지역별 접근)

- 환자 감소 추세 및 피로도, 의료체계 여력 안정화 등을 고려, 2단계 거리두기를 **1단계로 조정**하되 **고위험 다중이용시설 방역관리 강화**
- **수도권**은 타 지역에 비해 감염 확산 진정세가 더딘 점을 고려하여 **2단계에서 시행되던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**는 일부 유지

○ (정밀방역 강화)

- 시설 운영중단·폐쇄 등은 최소화하되, 시설별 위험도에 따라 정밀방역을 강화하고 과태료·구상권 등 수칙 위반 시, 벌칙의 실효성을 높여 책임성 확보

□ **방역 조치 책임성 제고 방안**

○ (집합금지·벌금)

- 방역수칙 의무화된 시설에서 이를 위반할 경우 기존과 같이 해당 시설 집합금지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

○ (과태료)

- 개정된 감염병법에 따라 **방역수칙 위반한 시설의 운영자·이용자에 과태료 부과**(10.13부터 시행)하여 **자율적 책임성 제고**
 - * 시설 운영자의 경우 1차 위반 시 150만원, 2차 이상 위반 시 300만원 부과, 이용자의 경우 1차 위반 시에도 과태료 10만원 부과
- **방역수칙의 심각한 위반이 있을 경우 지자체장이 3개월 이내의 시설 운영 중단 명령 가능**(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3항 신설, 12.30~)
⇒ 법령의 시행일 및 계도기간을 고려할 때 **과태료는 11월 13일부터, 시설 운영 중단 명령은 12월 30일부터 적용 가능**

○ (구상권)

- 방역수칙 위반행위로 인한 감염 확산 시 해당 위반자(개인, 단체)에 대한 **구상권 청구 활성화**
- 중앙부처·지자체 간 협의체 구성, 청구 기준 및 추진방안 구체화

□ **조정현황**

구 분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기 존> (8. 19. 0시 ~ 10. 11. 24시)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조 정> (10. 12. 0시 ~ 별도 해제 시) ※ 일부 시설 10. 18.(일) 24시까지</p>
<p>(1) 집합· 모임· 행사</p>	<p>○ 집합·모임·행사 : 실내 50인, 실외 100인 이상 : [금지]</p> <p>▶ 인원 기준</p> <div style="border: 1px dashed black; padding: 5px;"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원칙적으로 집합·모임·행사의 총 규모를 기준으로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하되, - 공간이 분할되어 있고, 공간 간 이동·접촉이 불가한 경우 분할된 공간(예: 교실) 내 인원을 기준으로 하여 진행할 수 있으며, - 인원 기준에 맞춰 개최하는 경우에도 마스크 착용, 출입명부, 2m(최소 1m) 간격 등 핵심방역수칙 준수 </div> <p>▶ 금지대상 사례</p> <div style="border: 1px dashed black; padding: 5px;"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(행 사) 전시회, 박람회, 설명회, 공청회, 학술대회, 기념식, 수련회, 집회, 페스티벌·축제, 대규모 콘서트, 씨인회, 강연 등 - (사적모임) 결혼식, 동창회, 동호회, 야유회, 회갑연, 장례식, 돌잔치, 워크샵, 계모임 등 - (각종시험) 채용시험, 자격증 시험 등(한 교실 내 50인 이내인 경우 허용) - (추석행사) 추석맞이 마을잔치, 지역축제, 민속놀이대회 등 포함 </div>	<p>○ 집합·모임·행사 <수도권 방역조치> : 실내 50인, 실외 100인 이상 : [자제 권고]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자제하되, 개최 시에는 마스크 착용,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철저히 준수하도록 권고 <p>※ 다만, 일시적으로 대규모 인원(100명 이상)이 모이는 전시회, 박람회, 축제, 대규모 콘서트, 학술행사 등 5종은 시설면적의 4㎡당 1명으로 인원제한</p>
<p>(2) 공공행사</p>	<p>○ 공공행사* : [연기.취소]</p> <p>* 전부처, 지자체, 관련 산하·공공기관 등 주관행사</p> <p>※ 불가피 개최 시, 실내 50인 미만, 실외 100인 미만으로 방역수칙 준수</p>	
<p>(3) 스포츠 행사</p>	<p>○ 스포츠 행사 : [무관중] * 프로야구, 축구, 씨름경기 등</p>	<p>○ 스포츠 행사 : [수용인원의 30%까지 관중 입장 허용]</p>

(4) 국·공립시설	○ (실내) 국공립시설* : [운영중단] * 정부, 지자체, 교육청 및 소속·산하기관에서 운영하는 국공립시설	○ (실내·외) 국공립시설* : [이용인원 최대 50% 제한운영] * 박물관, 미술관, 공연장, 도서관, 고궁, 공원, 경마·경륜·경정 등 - 마스크 착용,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철저히 준수
	○ (실내) 시립공공체육시설 : [운영중단] <인천시>	○ (실내·외) 시립공공체육시설 : [운영중단] <인천시> 10. 18.(일) 24시까지 연장
	○ (실외) 시립공공체육시설 : [운영중단] <인천시>	
	○ 공공문화시설 : [인원 50% 이내 제한운영] ▶ 추석특별방역기간 공공문화시설 제한운영 * 공공도서관 자료실, 부분개방 도서대출반납, 시립박물관 송암미술관, 제물포구락부, 은율탈춤전수관, 인천도호부관아, 인천상륙작전기념관, 관광안내소, 어린이과학관 등 <인천시>	○ (실내·외) 국공립시설 : [이용인원 최대 50% 제한운영] - 마스크 착용,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철저히 준수
	○ 인천대공원, 월미공원의 아영장, 매점 등 실내·외 다중이용시설 : [폐쇄] <인천시> ※ 산책로 등 실외공간은 개방 ※ 공원구역 실외에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 - 계도(20.10.12), 시행(20.10.13), 과태료(10만원 이하)	
	○ 월미바다열차 : [운영중단] <인천시>	
	○ 인천 해수욕장 : [폐장] - 다중이용시설 폐쇄 및 물품대여 종료(8.19.0시-) ※ 해양수산부 해양레저관광과-460(2020.8.18.)호	○ 인천 해수욕장 : [폐장] 유지 - 다중이용시설 폐쇄 및 물품대여 종료(8.19.0시-) ※ 해양수산부 해양레저관광과-460(2020.8.18.)호
(5) 고위험시설	○ 고위험시설 11종* : [집합금지] * 유흥주점, 콜라텍, 단란주점, 감성주점, 헌팅포차, 노래연습장, 살개스탠딩공연장, 살개집단운동(격렬한 GX류),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, 대형학원(300인 이상), 뷔페(호텔 내, 음식점 내, 돌잔치, 프랜차이즈 뷔페, 결혼식장 뷔페) ※ 중수본 고위험시설 추가지정 : PC방, 결혼식장의 뷔페(8.19 18시) ※ PC방 고위험시설 해제(9. 14)로 12종에서 11종으로 조정	○ 고위험시설 집합금지 해제(10종) : 핵심방역수칙 의무화[집합제한] * (10종) 유흥주점, 콜라텍, 단란주점, 감성주점, 헌팅포차, 노래연습장, 살개스탠딩공연장, 실내집단운동(격렬한 GX류), 대형학원(300인 이상), 뷔페(호텔 내, 음식점 내, 돌잔치, 프랜차이즈 뷔페, 결혼식장 뷔페) ※ 다만, 유흥주점, 콜라텍, 단란주점, 감성주점,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은 이용인원(4㎡당 1명) 제한 등 강화된 수칙 * 추가
	○ 유통물류센터 : 핵심방역수칙 의무화[집합제한] ※ 고위험시설이지만 필수산업시설로 당초 중수본 운영중단 대상에서 제외됨(8. 19. ~9. 27) ※ 핵심방역수칙 의무화로 인한 집합제한(9. 28. ~)	○ 고위험시설 집합금지 유지(1종) * (1종)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
		○ 유통물류센터 : 핵심방역수칙 의무화[집합제한] 유지
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(6) 다중이용시설</p>	<p>○ (위험도가 높은) 다중이용시설 8종 : 핵심방역수칙 의무화[집합제한]</p> <p>(1) 일반음식점·휴게음식점·제과점(카페 포함) 등은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의무화 (20석 초과는 의무화 / 20석 이하는 권고) ※ 이를 지키기 어려울 경우 ① 좌석 한 칸 띄어앉기 ② 테이블 간 띄어앉기 ③ 테이블 간 칸막이·가림막 설치 中 하나 반드시 준수</p> <p>(2) 영화관·공연장 : 좌석 한 칸 띄어앉기</p> <p>(3) 놀이공원·워터파크 : 사전 예약제를 통해 입장인원 제한(수용인원 1/2)</p>	<p>○ 다중이용시설 16종 <수도권 방역조치> : 핵심방역수칙 의무화[집합제한] 유지</p> <p style="border: 1px dashed black; padding: 5px;">* (16종) ▲일반음식점·휴게음식점·제과점 (150㎡ 이상) ▲워터파크 ▲놀이공원 ▲공연장, ▲영화관 ▲PC방 ▲학원(300인 미만, 교습소, 독서실 포함) ▲직업훈련기관 ▲스터디카페 ▲오락실 ▲종교시설 ▲실내결혼식장 ▲목욕탕·사우나 ▲살내체육시설 ▲멀티방·DVD방 ▲장례식장</p> <p>- (공통수칙) 시설 내 마스크 착용, 출입자 명단 관리, 이용자 간 거리두기, 주기적 환기·소독 등 핵심방역수칙 의무화</p>
	<p>○ 위험도가 높은 일부 다중이용시설 12종 : 핵심방역수칙 의무화[집합제한]</p> <p>* 학원(300인 미만, 교습소, 독서실, 오락실, 종교시설, 교회 제외), 실내결혼식장, 목욕탕·사우나, 실내체육시설, 멀티방·DVD방, 장례식장, 스터디카페, 직업훈련기관</p> <p>※ 위 다중이용시설은 8. 19부터 10. 11까지 정부방침에 따라 대상시설 유형이 일부 조정됨</p> <p>○ PC방 : 핵심방역수칙 의무화[집합제한] ※ 좌석 한 칸 띄어앉기, 미성년자 출입금지 (음식 섭취 가능 9. 28. ~) ※ 고위험시설 해제(9. 14. 0시)</p>	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(7) 공동주택 주민편의시설</p>	<p>○ 공동주택 주민편의시설 : [운영자제 권고] <인천시> ※ 중단권고(8. 23.~9. 27) → 자체권고(9. 28. 0시~)</p>	<p>○ 공동주택 주민편의시설 : [운영자제 권고] <인천시> 10. 18.(일) 24시까지 연장</p>
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(8) 종교시설</p>	<p>○ 교회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비대면 예배만을 허용하고, 교회가 주관하는 모든 대면모임과 행사, 단체식사 등을 금지하는 등 핵심방역수칙 의무화 행정조치(집합제한 조치) <div style="border: 1px dotted black; padding: 5px;"> <p>※ 수도권 교회 비대면 예배 기준 변경안내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적용기간: 9. 20.(일) ~ 별도 해제 시 ○ 비대면 예배는 영상 제자와 송출을 원칙으로 하며 비대면 예배시 '예배실당 좌석 수 기준'에 따라 인력을 최소화하여 운영 - 예배실 300석 이상 은 50명 미만 300석 미만은 20명 이내로 실시 * 동일 교회 내 예배실이 여러개인 경우 상기 기준에 따라 실시 * 단 비대면 예배를 위한 필수인력도 교회 내 방역수칙 준수 철저 </div>	<p>○ 교회 <수도권 방역조치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예배실 좌석 수의 30% 이내 대면예배 허용하며, 추후 단계적 확대 <p>※ <u>소모임, 행사, 식사금지는 기존 조치 유지</u></p>
	<p>○ 타종교시설 <인천시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종교시설에 대한 정규 미사·법회 등을 제외한 종교시설 주관 대면모임과 행사, 단체식사 등을 금지 등 11개 항목 준수 필수 	<p>○ 타종교시설 : [기존 유지] <인천시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종교시설에 대한 정규 미사·법회 등을 제외한 종교시설 주관 대면모임과 행사, 단체식사 등을 금지 등 11개 항목 준수 필수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(9) 사회복지시설 및 어린이집</p>	<p>○ 사회복지이용시설 및 어린이집 : [휴관·휴원 권고]</p> <p>※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 유지</p>	<p>○ 사회복지이용시설* 및 어린이집 : [운영 재개]</p> <p>* 복지관, 경로당, 장애인주간보호시설, 지역 아동다함께돌봄센터 등 사회복지이용시설 및 어린이집 운영재개</p> <p>※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철저히 준수 및 이용자 밀집을 최소화하는 등 시설별 방역계획 수립하여 운영</p>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(10) 학 교</p>	<p>○ 교육부 계획에 의거 추진</p>	<p>○ 교육부 계획에 의거 추진</p>

(11) 기관 · 기업	공 공	○ 市 및 군·구, 공사·공단 직원 : 유연·재택근무 등 현원 1/3 의무 시행	○ 유연·재택근무 등을 통한 근무밀집도 최소화 (예: 전 인원의 1/3) ※ 출근한 인원은 시차출퇴근제 및 점심 시간 시차 운영 적극 활용
	민 간	○ 공공기관 수준의 근무형태 개선 권고	○ 유연·재택근무 등 활성화 권장
(12) 우리 市 행정조치		○ 인천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조치 - (대상) 인천시민 및 지역방문자(실내·외) - (기간) 2020. 8. 20. 15:00 ~ 별도 해제 시 - (계도기간) ~ 2020. 10. 12.(월) 까지 - (과태료 부과 시행) 2020. 10. 13.(화) ※ 과태료 10만원 이하 ※ 마스크 착용 세부지침(2020. 9. 2.)	○ 과태료 부과 등 정부자침(10.12.) 반영 후, 인천시 마스크 의무화 행정조치 재발령 (예정) - (기간) 2020. 10. 13.(화) ~ 별도 해제 시 - (계도기간) ~ 2020. 11. 12.(목) 까지 - (과태료 부과 시행) 2020. 11. 13.(금) ※ 과태료 · 위반당사자(10만원) · 관리·운영자(1차 150만원, 2차 300만원)
		○ 인천시 전역 10인 이상 옥외 집회금지 행정명령 조치 - (명령대상) 인천시 전역 10인 이상 옥외집회 및 시위 신고 - (당 초) 2020. 8.24. 0시 ~ 9. 6. 24시 - (1차 연장) 2020. 9. 7. 0시 ~ 9. 20. 24시 - (2차 연장) 2020. 9.21. 0시 ~ <u>10. 11. 24시</u> ※ 벌금 300만원 이하 ※ 금지되는 집회는 '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' 에 따라 신고대상이 되는 집회	“별도 발령 예정”
		○ 인천시 관내 전세버스 탑승객 전자출입 명부 도입 및 명부 작성 의무화 - (적용기간) 2020. 8. 26. 0시 ~ 별도 해제 시 - (계도기간) 2020. 10. 11. 까지 - (시 행) 2020. 10. 12. - (과 태 료) 운송사업자(300만원 이하) / 이용자(10만원 이하)	“기존 조치 유지”

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세부시행(1단계)

※ **조정** 및 **변경**(적색) / **시설별 핵심방역수칙**(참고 1~3)

I. 개요

1 | 집합 · 모임 · 행사

구분	적용기간	조정내용
집합모임행사	2020. 8. 19. 0시 ~ 10. 11. 24시	○ 실내 50인, 실외 100인 이상 [금지]
	2020. 10. 12. 0시 ~ 별도 해제 시	○ 실내 50인, 실외 100인 이상 [자제 권고] <수도권 방역조치> - 자제하되, 개최 시에는 마스크 착용,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철저히 준수하도록 권고 ※ 다만, 일시적으로 대규모 인원(100명 이상)이 모이는 전시회, 박람회, 축제, 대규모 콘서트, 학술행사 등 5종은 시설면적의 4㎡당 1명으로 인원 제한

2 | 공공행사

구분	적용기간	조정내용
공공행사	2020. 8. 19. 0시 ~ 10. 11. 24시	○ 공공행사 [연기 · 취소] - 불가피 개최 시, 실내 50인 미만, 실외 100인 미만으로 방역수칙 준수 - 모든 회식 금지, 점심식사 시, 구내식당 및 도시락 이용 통해 이동 최소화
	2020. 10. 12. 0시 ~ 별도 해제 시	○ 실내 50인, 실외 100인 이상 [자제 권고] <수도권 방역조치> - 자제하되, 개최 시에는 마스크 착용,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철저히 준수하도록 권고 ※ 다만, 일시적으로 대규모 인원(100명 이상)이 모이는 전시회, 박람회, 축제, 대규모 콘서트, 학술행사 등 5종은 시설면적의 4㎡당 1명으로 인원 제한

3

스포츠 행사

구분	적용기간	조정내용
스포츠 행사 * 프로야구, 축구, 씨름경기 등	2020. 8. 19. 0시 ~ 10. 11. 24시	○ [무관중 경기]
	2020. 10. 12. 0시 ~ 별도 해제 시	○ [수용인원의 30%까지 관중 입장 허용, 추후 단계적 확대]

4

국·공립시설

4-1. (실내) 국공립시설

구분	적용기간	조정내용
실내 국공립시설 (공공문화시설 포함)	2020. 8. 19. 0시 ~ 10. 11. 24시	○ 실내 국공립시설 [운영중단] ※ 추석특별방역기간 인천시 공공문화시설 이용인원 50% 제한운영 (9.28. 0시 ~ 10. 11. 24시)
	2020. 10. 12. 0시 ~ 별도 해제 시	○ 실내.외 국공립시설* [이용인원 최대 50% 제한운영] * 박물관, 미술관, 공연장, 도서관, 고궁, 공원, 경마·경륜·경정 등 ※ 마스크 착용,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철저 준수

4-2. (실내·외) 시립공공체육시설

구분	적용기간	조정내용
실내·외 시립공공 체육시설	2020. 8. 19. 0시 ~ 10. 11. 24시 * 실외 (9. 1. ~ 10. 11)	○ [운영중단]
	2020. 10. 12. 0시 ~ 10. 18. 24시까지 (연장)	○ [운영중단] 연장 <인천시>

4-3. 인천대공원, 월미공원의 야영장, 매점 등 실내외 다중이용시설

구 분	적 용 기 간	조 정 내 용
인천대공원, 월미공원 (야영장, 매점 등 실내외 다중이용 시설)	2020. 8. 24 ~ 10. 11. 24시	○ [폐쇄] <인천시> ※ 산책로 등 실외공간은 개방
	2020. 10. 12 0시 ~ 별도 해제 시	○ [이용인원 최대 50% 제한운영] ※ 마스크 착용,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철저히 준수

4-4. 월미바다열차

구 분	적 용 기 간	조 정 내 용
월미바다열차	2020. 8. 19. 0시 ~ 10. 11. 24시	○ [운영중단]
	2020. 10. 12 0시 ~ 10. 18. 24시까지 (연장)	○ [운영중단] 연장 <인천시>

4-5. 인천 해수욕장

구 분	조 치 기 간	조 치 사 항
인천해수욕장	2020. 8. 19. 0시 ~ 별도 해제 시 (기존 조치 유지)	○ [폐장] 유지 ※ 다중이용시설 폐쇄 및 물품대여 종료(8.19. 0시 ~) ※ 해양수산부 해양레저관광과-460(2020. 8. 18.)호

5

고위험시설

구 분	조 치 사 항
고위험시설	<p>○ 2020. 8. 19. 0시 ~ 10. 11. 24시</p> <p>1) 고위험시설 11종 [집합금지] : 2020. 8. 19. 0시 ~ 10. 11. 24시 ※ (11종) 유흥주점, 콜라텍, 단란주점, 감성주점, 헌팅포차, 노래연습장, 실내스탠딩 공연장, 실내집단운동(격렬한 GX류),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, 대형학원(300인 이상), 뷔페(호텔 내, 음식점 내, 돌잔치, 프랜차이즈 뷔페, 결혼식장 뷔페) ※ 중수본 고위험시설 추가지정(8. 19. 18시) : PC방, 결혼식장 뷔페 ※ PC방 고위험시설 해제(9. 14.)로 12종에서 11종으로 조정</p> <p>2) 유통물류센터 핵심방역수칙 의무화[집합제한] : 9. 28. 0시 ~ 10. 11. 24시 ※ 유통물류센터는 고위험시설 운영중단 대상시설에서 제외(8. 19. ~ 9. 27.)</p>
	<p>○ 2020. 10. 12. 0시 ~ 별도 해제 시</p> <p>1) 고위험시설 10종 [집합금지 해제 및 핵심방역수칙 의무화[집합제한] * (10종) 유흥주점, 콜라텍, 단란주점, 감성주점, 헌팅포차, 노래연습장, 실내스탠딩공연장, 실내 집단운동(격렬한 GX류, 대형학원(300인 이상), 뷔페(호텔 내, 음식점 내, 돌잔치, 프랜차이즈 뷔페, 결혼식장 뷔페) ※ 다만, 유흥주점, 콜라텍, 단란주점, 감성주점, 헌팅포차 등 <u>유흥시설 5종은 이용인원(4㎡당 1명) 제한 등 강화된 수칙 ** 추가</u></p> <p>2) 고위험시설 1종 (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) [집합금지] 유지</p> <p>3) 유통물류센터 핵심방역수칙 의무화[집합제한] 유지</p>

6

다중이용시설

구 분	조 치 기 간	조 치 사 항
다중이용시설	2020. 8. 19. 0시 ~ 10. 11. 24시	<p>○ 핵심방역수칙 의무화[집합제한] ※ 다중이용시설은 8.19부터 정부방침에 따라 방역수칙 내용 조정</p>
	2020. 10. 12. 0시 ~ 별도 해제 시	<p>○ 핵심방역수칙 의무화[집합제한] 유지 <수도권 방역조치> (16종) ▲일반음식점·휴게음식점·제과점(150㎡ 이상) ▲위터파크 ▲놀이공원 ▲공연장, ▲영화관 ▲PC방 ▲학원(300인 미만, 교습소, 독서실 포함) ▲직업훈련기관 ▲스터디카페 ▲오락실 ▲종교시설 ▲실내결혼식장 ▲목욕탕·사우나 ▲실내체육시설 ▲멀티방·DVD방 ▲장례식장 ※ (공통수칙) 시설 내 마스크 착용, 출입자 명단관리, 이용자 간 거리두기, 주기적 환기·소독 등 의무화</p>

7 | 공동주택 주민편의시설

구분	조치기간	조치사항
공동주택 주민편의시설	2020. 8. 23. ~ 9. 27. 24시	○ [운영중단 권고]
	2020. 9. 28. 0시 ~ 10. 11. 24시	○ [운영자제 권고]
	2020. 10. 12. 0시 ~ 10. 18. 24시까지 (연장)	○ [운영자제 권고] 연장 <인천시> ※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철저히 준수

8 | 종교시설

8-1. 교회

구분	조치기간	조치사항
교회	2020. 8. 19. 0시 ~ 별도 해제 시	○ [비대면 예배만을 허용] ※ 교회가 주관하는 모든 대면모임과 행사, 단체식사 등을 금지하는 등 핵심방역수칙 의무화 행정조치(집합제한 조치) ※ 9. 20. ~ (수도권 교회 비대면 예배 기준 변경 실시)
	2020. 10. 12. 0시 ~ 별도 해제 시	○ [예배실 좌석 수의 30% 이내 대면예배 허용하며, 추후 단계적 확대] <수도권 방역조치> ※ 소모임, 행사, 식사금지는 유지

8-2. 타종교시설

구 분	조 치 기 간	조 치 사 항
타종교시설 〈인천시〉	2020. 8. 30 ~ 별도 해제 시 (기존 조치 유지)	○ 종교시설에 대한 정규 미사·법회 등을 제외한 종교시설 주관 대면모임 활동 및 행사 금지 ○ 정규 미사·법회 시 11개 항목 준수(필수)

타 종교시설 방역수칙 (교회 외)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정규 미사·법회 등을 제외한 종교시설 주관 대면모임 활동 및 행사 금지 ② 유증상 종사자 즉시 퇴근(체온 등 1일 2회 점검해 대장 작성) ③ 출입구에서 발열, 호흡기 증상 여부 확인 및 최근 2주 사이 해외 여행력이 있는 사람, 발열 또는 호흡기 등 유증상자, 고위험군 출입 금지(대장 작성) ④ 간염관리 책임자 지정 및 출입명부 관리(전자출입명부 설치 또는 수기명부 작성4주간 보관) ⑤ 종사자 및 이용자 전원 마스크 착용(마스크 미착용 시 입장 금지) ⑥ 출입구 및 시설 내 각처에 손 소독제 비치 ⑦ 종교 행사 참여자 간 간격 최소 2m 이상 유지 ⑧ 집회 전후 소독 및 환기 실시(일시·관리자 확인 포함 대장 작성) * 문 손잡이,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⑨ 음식제공 및 단체 식사 제공 금지 ⑩ 종교행사 시 지정석 지정 운영 ⑪ 미사·법회 시 성가 자제 등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거나 말하는 행위 금지

9 사회복지이용시설 및 어린이집

구 분	조 치 기 간	조 치 사 항
사회복지 이용시설* 및 어린이집	2020. 8. 19. 0시 ~ 10. 11. 24시	○ [휴관·휴원 권고] ※ 긴급 돌봄 등 필수 서비스 유지
	2020. 10. 12 0시 ~ 별도 해제 시	○ [운영재개] * 복지관, 경로당, 장애인주간보호시설, 지역아동다함께돌봄센터 등 사회복지이용시설 및 어린이집 운영재개 ※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철저히 준수 및 이용자 밀집을 최소화 하는 등 시설별 방역계획 수립하여 운영

10

학교(유.초.중.고)

※ 교육부 계획에 의거 추진

11

기관 . 기업

11-1. (市 및 군.구, 공사.공단 직원) 유연.재택근무

구 분	적 용 기 간	조 정 내 용
공공기관·기업	2020. 8. 20 ~ 별도 해제 시	○ [유연·재택근무 등을 통해 근무인원 제한] - 현원 1/3 의무시행
	2020. 10. 12 0시 ~ 별도 해제 시	○ [유연·재택근무 등을 통한 근무밀집도 최소화] - 예) 전 인원의 1/3 ※ 출근한 인원은 시차출퇴근제 및 점심시간 시차 운영 적극 활용

11-2. (민간기업) 공공기관 수준의 근무형태 제한 권고

구 분	적 용 기 간	조 정 내 용
민간기관·기업	2020. 8. 19. 0시 ~ 별도 해제 시	○ [유연, 재택근무 등을 통해 근무인원 제한 권고]
	2020. 10. 12 0시 ~ 별도 해제 시	○ [유연, 재택근무 등 활성화 권장]

12 | 우리 市 행정조치

12-1. 인천시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조치

- ▶ (당 초) 2020. 8. 20. 15시 ~ 별도 해제 시

- (대상) 인천시민 및 지역방문자(실내,외)
- (기간) 2020. 8. 20. 15:00 ~ 별도 해제 시
- (계도기간) ~ 2020. 10. 12.(월) 까지
- (과태료 부과 시행) 2020. 10. 13.(화)
※ 과태료 10만원 이하 / 마스크 착용 세부지침(2020. 9. 2.)

- ▶ **조정(안) 2020. 10. 13. 0시 ~ 별도 해제 시**

- ◎ 과태료 부과 등 정부지침(10.12.) 반영 후, **인천시 마스크 의무화 행정조치 재발령 (예정)**
- (기간) 2020. 10. 13.(화) ~ 별도 해제 시
- (계도기간) ~ 2020. 11. 12.(목) 까지
- (과태료 부과 시행) 2020. 11. 13.(금)
※ 과태료 : 위반당사자(10만원) / 관리·운영자(1차 150만원, 2차 300만원)

12-2. 인천시 전역 10인 이상 옥외 집회금지 행정조치

- ▶ (당 초) 2020. 8. 24. 0시 ~ 9. 6. 24시
- ▶ (1차 연장) 2020. 9. 7. 0시 ~ 9. 20. 24시
- ▶ (2차 연장) 2020. 9. 21. 0시 ~ 10. 11. 24시
- ▶ (3차 연장) **별도 발령 (예정)**
- ▶ (명령대상) 인천시 전역 10인 이상 옥외집회 및 시위 신고자
- ▶ (벌 금) 벌금 300만원 이하
※ 금지되는 집회는 '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'에 따라 신고대상이 되는 집회

12-3. 인천시 관내 등록업체 전세버스 탑승객 전자출입명부 도입 및 명부 작성 의무화 행정조치

- ▶ (적용기간) 2020. 8. 26. 0시 ~ 별도 해제 시 까지
- ▶ (계도기간) 2020. 10. 11.
- ▶ (시행일자) 2020. 10. 12.
- ▶ (과 태 료) 운송사업자(300만원 이하) / 이용자(10만원 이하)

참고 1

고위험시설 핵심 방역수칙

고위험시설	사업주·종사자 수칙	이용자 수칙
헌팅포차, 감성주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출입자 명부 관리(4주 보관 후 폐기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전자출입명부 설치 - 수기명부 비치(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, 신분증 확인) ■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최근 2주 사이 해외여행력 있는 사람, 유증상자 출입금지 ■ 사업주·종사자 마스크 착용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(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, 신분증 제시) ■ 증상확인 협조 및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■ 마스크 착용(음식물 섭취 시 제외) ■ 이용자 간 2m(최소1m) 이상 간격 유지
유흥주점 (클럽, 룸살롱 등), 콜라텍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1일 2회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(대장작성) ■ 방역관리자 지정 ■ 영업 전/후 등 최소 2회 이상 시설 소독 및 환기(대장작성) * 문 손잡이,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■ 시설 외부에서 줄 서는 경우 2m(최소1m) 거리 유지 ■ 시설 내 이용자 간 2m(최소1m) 이상 간격 유지 	
단란주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출입구 및 시설 내 각처에 손 소독제 비치 ■ 이용인원 제한 (시설 허가신고면적 4㎡당 1명) ■ 시간제 운영(3시간 운영 후 1시간 휴식) 	

고위험시설	사업주·종사자 수칙	이용자 수칙
노래연습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출입자 명부 관리(4주 보관 후 폐기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전자출입명부 설치 - 수기명부 비치(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, 신분증 확인) ■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■ 사업주·종사자 마스크 착용 ■ 1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(대장작성) ■ 방역관리자 지정 ■ 영업 전/후 시설소독(대장작성) ■ 손님이 이용한 룸은 분무기 등으로 물을 뿌린 후 문을 닫고, 30분 뒤 소독 실시 후 재사용(대장작성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(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, 신분증 제시) ■ 증상확인 협조,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■ 마스크 착용(노래 부르지 않는 경우)
실내 스탠딩 공연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출입자 명부 관리(4주 보관 후 폐기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전자출입명부 설치 - 수기명부 비치(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, 신분증 확인) ■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■ 사업주·종사자 마스크 착용 ■ 1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(대장작성) ■ 방역관리자 지정 ■ 공연 전/후 시설소독(대장작성) ■ 시설 내 이용자 간 2m(최소1m) 이상 간격 유지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(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, 신분증 제시) ■ 증상확인 협조,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■ 마스크 착용

고위험시설	사업주·종사자 수칙	이용자 수칙
<p>유통물류센터</p>	<p>(사업주 수칙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출입자 명부 관리(4주 보관 후 폐기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일용직(아르바이트생 포함) 및 방문자 포함 - 전자출입명부 설치 - 수기명부 비치(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, 신분증 확인) ■ 1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(대장작성) ■ 사업주 마스크 착용, 종사자들에 마스크 착용 안내 ■ 물류시설(구역)별 방역관리자 지정 ■ 하역·운반 장비, 공용물품(작업복·작업화 등) 매일 1회 이상 소독(대장 작성) ■ 근로자 간 간격 2m(최소 1m) 유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휴게실·흡연실·구내식당 등 공용시설 이용 시 간격 유지 안내 	<p>(근로자 수칙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(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, 신분증 제시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일용직(아르바이트생 포함) 및 방문자 포함 ■ 증상 확인 협조, 발열·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출근 자제 ■ 마스크 착용 ■ 근로자 간 2m(최소 1m) 이상 거리 유지
<p>대형학원 (300인 이상)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출입자 명부 관리(4주 보관 후 폐기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전자출입명부 설치(세부사항은 교육부 지침 참고) - 수기명부 비치(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, 신분증 확인) ■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■ 방역관리자 지정 ■ 사업주·종사자 마스크 착용 ■ 1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(대장작성) ■ 수업 전/후 시설 소독 및 환기(대장작성) ■ 시설 내 이용자 간 2m(최소1m) 간격 유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강의실·열람실 등 자리 배치 시 고려 ■ 공용차량 운행 시, 운전자 마스크 착용, 차량 운행 전후 소독(대장 작성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(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, 신분증 제시) ■ 증상확인 협조 및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■ 마스크 착용 ■ 이용자 간 2m(최소1m) 이상 간격 유지

고위험시설	사업주·종사자 수칙	이용자 수칙
<p>실내집단운동 (격렬한GX류)</p> <p>* GX(Group Exercise) 줄바, 태보, 스피닝 등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출입자 명부 관리(4주 보관 후 폐기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전자출입명부 설치 - 수기명부 비치(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, 신분증 확인) ■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■ 사업주·종사자 마스크 착용 ■ 1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(대장작성) ■ 방역관리자 지정 ■ 수업 전/후 시설소독(대장작성) ■ 1일 1회 샤워실탈의실 등 소독(대장 작성) ■ 시설 내 이용자 간 2m(최소1m) 이상 간격 유지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(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, 신분증 제시) ■ 증상확인 협조,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■ 마스크 착용
<p>뷔페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출입자 명부 관리(4주 보관 후 폐기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전자출입명부 설치 - 수기명부 비치(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, 신분증 확인) - 실내·외 매장에서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경우(포장·배달 등) 출입자 명부 작성 제외 ■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■ 방역관리자 지정 ■ 사업주·종사자 마스크 착용 ■ 1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(대장작성) ■ 영업 전/후 시설 소독(대장작성) ■ 매장 입구 및 테이블 등에 손 소독제 비치 * 필요 시 비닐장갑 함께 비치 ■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2m(최소1m) 이상 간격 유지 ■ 테이블 간 2m(최소 1m) 간격 유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이를 지키기 어려울 경우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좌석 한 칸 띄워 앉기, ② 테이블 간 띄워 앉기, ③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등 설치 중 하나는 반드시 준수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(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, 신분증 제시) - 실내·외 매장에서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경우(포장·배달 등) 출입자 명부 작성 제외 ■ 증상확인 협조 및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■ 마스크 착용 (입장, 음식 담기 위해 이동 시) ■ 공용 집게·접시·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■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2m(최소1m) 이상 간격 유지

참고 2

수도권 다중이용시설 핵심 방역수칙

□ 일반음식점·휴게음식점·제과점(150㎡ 이상 의무화)

* 면적 150㎡ 미만은 권고

사업주·종사자 수칙	이용자 수칙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매장 내 테이블 간 최소 1m 간격 유지 - 이를 지키기 어려울 경우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좌석 한 칸 띄워 앉기, ② 테이블 간 띄워 앉기, ③ 테이블 간 칸막이·가림막 등 설치 중 하나는 반드시 준수 ▶ 출입자 명부 관리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전자출입명부 설치·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(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,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) * 전자출입명부를 우선적으로 설치·이용(권고) - 실내·외 매장에서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경우(포장·배달 등) 출입자 명부 작성 제외 ▶ 사업주·종사자 마스크 착용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음식 섭취 시에는 제외 ▶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, 테이블·손잡이 등 표면 소독(일 2회 이상) ▶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매장 내 테이블 간 최소 1m 간격 유지 - 이를 지키기 어려울 경우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좌석 한 칸 띄워 앉기, ② 테이블 간 띄워 앉기, ③ 테이블 간 칸막이·가림막 등 설치 중 하나는 반드시 준수 ▶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(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, 신분증 제시) - 실내·외 매장에서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경우(포장·배달 등) 출입자 명부 작성 제외 ▶ 마스크 착용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음식 섭취 시에는 제외

□ 학원(교습소·독서실 포함), 스터디카페, 직업훈련기관

사업주·종사자 수칙	이용자 수칙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출입자 명부 관리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전자출입명부 설치·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(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,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) * 전자출입명부를 우선적으로 설치·이용(권고) ▶ 출입자 증상 확인(발열체크 등)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▶ 사업주·종사자 마스크 착용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음식 섭취, 물속 활동 등은 제외 ▶ 시설 내 이용자 간 2m(최소 1m) 간격 유지하도록 이용 인원 관리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좌석 한 칸 띄워앉기 등 ▶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, 테이블·손잡이 등 표면 소독(일 2회 이상) ▶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(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, 신분증 제시) ▶ 증상확인 협조 및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▶ 마스크 착용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음식 섭취, 물속 활동 등은 제외 ▶ 이용자 간 2m(최소 1m) 간격 유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좌석 한 칸 띄워앉기 등

□ 워터파크, 놀이공원

사업주·종사자 수칙	이용자 수칙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수용가능인원의 절반으로 이용인원 제한 ▶ 출입자 명부 관리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전자출입명부 설치·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(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,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) * 전자출입명부를 우선적으로 설치·이용(권고) ▶ 사업주·종사자 마스크 착용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음식 섭취, 물속 활동 등은 제외 ▶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, 테이블·손잡이 등 표면 소독(일 2회 이상) ▶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(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, 신분증 제시) ▶ 마스크 착용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음식 섭취, 물속 활동 등은 제외

□ 실내체육시설, 오락실, 종교시설(교회 제외), 실내 결혼식장, 목욕장업, 멀티방·DVD방, 장례식장, 영화관, 공연장

사업주·종사자 수칙	이용자 수칙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출입자 명부 관리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전자출입명부 설치·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(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,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) * 전자출입명부를 우선적으로 설치·이용(권고) ▶ 사업주·종사자 마스크 착용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음식 섭취, 물속 활동 등은 제외 ▶ 시설 내 이용자 간 2m(최소 1m) 간격 유지하도록 이용 인원 관리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좌석 한 칸 띄워 앉기 등 ▶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, 테이블·손잡이 등 표면 소독(일 2회 이상) ▶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(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, 신분증 제시) ▶ 마스크 착용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음식 섭취, 물속 활동 등은 제외 ▶ 이용자 간 2m(최소 1m) 간격 유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좌석 한 칸 띄워 앉기 등

□ PC방

사업주·종사자 수칙	이용자 수칙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좌석 한 칸 띄워 앉도록 하기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좌석 간 칸막이 설치된 경우 제외 ▶ 출입자 명부 관리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전자출입명부 의무 설치·이용*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보조적으로 수기명부 비치(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, 신분증 확인, 4주 보관 후 폐기) * 전자출입명부 지침 참고 ▶ 사업주·종사자 마스크 착용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음식 섭취 시 제외 ▶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, 테이블·손잡이 등 표면 소독(일 2회 이상) ▶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좌석 한 칸 띄워 앉기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좌석 간 칸막이 설치된 경우 제외 ▶ 전자출입명부 인증*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수기명부 작성 가능(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, 신분증 제시) ▶ 마스크 착용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음식 섭취 시 제외

참고 3

수도권 교회 핵심 방역수칙

□ 교회

책임자·종사자 수칙	이용자 수칙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정규예배 시 예배실당 좌석 수의 30% 이내의 인원 참여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이후 단계적 허용 등 지속 협의 ■ 교회 주관의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* 금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수련회, 기도회, 부흥회, 구역예배, 성경공부 모임, 성가대 연습 모임 등 ■ 음식 제공 및 단체 식사 금지 ■ 출입자 명부 관리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전자출입명부 설치·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(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, 신분증 확인, 4주 보관 후 폐기) ■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■ 방역관리자 지정 ■ 마스크 착용 ■ 1일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시설 소독(대장작성) ■ 시설 내 이용자 간 2m(최소1m) 간격 유지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정규예배 시 예배실당 좌석 수의 30% 이내의 인원 참여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이후 단계적 허용 등 지속 협의 ■ 교회 주관의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* 금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수련회, 기도회, 부흥회, 구역예배, 성경공부 모임, 성가대 연습 모임 등 ■ 시설 내 음식 섭취 금지 ■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(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, 신분증 제시) ■ 증상확인 협조 및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■ 마스크 착용 ■ 이용자 간 2m(최소1m) 이상 간격 유지